

논문집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

1.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

가.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1)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,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에 의거,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3)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4)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,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, 전공 등을 고려한다.
- 5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.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,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6) 편집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학제간으로 활성화시키고, 일본학연구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한편,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자문한다.
- 7)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.
- 8) 국내외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, 전공 등을 고려하되, 특히 학술연구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논문집 명칭, 발간시기 및 원고 마감

- 1) 논문집의 명칭은 『일본학』(영문: THE ILBON-HAK Journal of Japanology)로 한다.
- 2) 연간 3회, 매년 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에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년 5월까지의 연간 2회,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)
- 3) 원고 마감은 매년 3월 31일, 7월 30일, 11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년 5월까지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)

다. 편집의 방침

- 1) 본 논문집은 일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,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실는다.
- 2) 본 논문집은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.
- 3) 연구논문의 편집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기획 특집을 연구소 학술회의와 연관하여 적극 추진한다.
- 4)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서에 대한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.
- 5)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.

- 6) 이 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(학술기행, 강연록 등)을 수록할 수 있다.
- 7) 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 필자의 소속과 직위(저자 정보)가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한다.
- 8)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저자 정보를 상시 확인 및 관리하고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라. 논문집의 배부 및 원고료

- 1) 발행 부수는 당해연도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.
- 2) 무가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국내 대학의 도서관,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 학회 및 국내 전공교수에게 배부한다.
- 4) 논문집 게재 논문의 원고료는 해당 논문집 2권과 별쇄본 20부로 한다.
- 5)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.
- 6) 심사 완료 후 게재로 판정된 일반논문은 10만원,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.

2. 논문집 심사 규정

가. 심사의 주관

- 1) 논문집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, 3인의 해당분야 전문학자를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10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.
- 3)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편집위원이 투고하게 되면, 해당 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일시 배제하고,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연구소 임원을 위촉하지 않는다.
- 5)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은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,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논문 심사를 마치고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.
- 6) 연구논문(특집 논문 및 일반 논문)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.
- 7)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나. 심사의 기준

- 1) 연구논문
 - (1) 모든 투고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 - (2)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 - (3)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.
 - (4) 본 논문집 심사에서 '반려'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.

- (5)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주제나 방법,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.
 -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.
 -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(6) 본 논문집 투고 논문은 연구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.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.

2) 서평 및 기타 원고

- (1)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(2) 서평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.
- (4)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.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.

다. 심사의 절차

1) 연구논문

- (1)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‘게재’(A), ‘부분수정 후 게재’(B), ‘수정 후 재심사’(C), ‘반려’(D)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.
- (3) 3인의 심사의견 중에서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판정에 따른다.
- (4) 단, 심사위원 1인이라도 반려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.
 - 수정 후 재심사: AAD, BBD
 - 반려: CCD
- (5) 심사위원의 견해가 엇갈려 위 3, 4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 판정한다.
 - 부분 수정 후 게재: ABC
 - 수정 후 재심사: ABD, ACD
 - 반려: BCD
- (6) 종합판정에서 ‘부분수정 후 게재’와 ‘수정 후 재심사’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- (7)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보편타당한 정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.
- (8) 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단,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

는다.

2) 서평 및 기타 원고

- (1)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유관 분야의 편집위원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.
- (2) 심사를 맡은 편집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‘게재’, ‘부분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반려’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(3)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르며, 의견이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게재와 수정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.
- (4) 모든 원고의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
라.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.

마.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

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분야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.

바.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

1)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

- (1)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.
- (2)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,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논문집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.
- (3)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결봉에 ‘사후 심사요청’임을 명기하되, 발신자의 신원을 결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.
- (5)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2)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

- (1)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(2)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.
- (3) 질의서를 받은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에는 논문 필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.

3)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

- (1)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
- (2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3)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.
 -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논문집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.
 - ② 논문집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.
 - ③ 해당 논문 필자의 논문 투고는 향후 최소 5년간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(4)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사. 부칙

- 1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.

2008년 9월 1일 제정

2016년 3월 1일 개정

2020년 3월 1일 개정